

조례안 ·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노민섭]

목 차

1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
3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4	거창군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5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6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7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8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9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심의안.....	63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심의안	69
11	거창문화재단 지원 출연심의안	79
12	거창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87
13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재위탁 동의요구안	101
14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	113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10. 17.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10. 20.

2. 제안이유

-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행정대집행, 계약 등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의 활용을 통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특별자문 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기준·절차를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특별자문 신설(안 제3조의2)
 - 1) 대상: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직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사항 등
 - 2) 방법: 고문변호사에게 수당 외에 별도 자문료 지급, 고문변호사 외의 변호사에게도 특별자문 가능
- 나. 공무원 소송비용 세부지원기준 등 규칙위임 사항 신설(안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1천2백만원 확보(특별자문비용)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9. 26.~10. 1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사고 등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특별자문 조항을 신설하고 소송비용에 지원에 관한 기준·절차 세부기준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10. 17.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2. 10. 20.

2. 제안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3. 1. 1.)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 재정 확충으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답례품선정위원회, 답례품의 종류·선정,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를 정함(안 제2조~제6조)

나. 지정 금융기관에 사무의 위탁을 정함(안 제7조)

다. 고향사랑 기금의 목적, 기금운용관, 심의위원회 구성, 임기 등을 정함(안 제8조~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
-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나. 예산조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56,932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및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9. 13.~10. 4.
 - 나) 예고결과: 의견있음(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붙임)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 1. 1. 시행 예정임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한 답례품 제공에 대한 사항을 제2조부터 제6조에 알맞게 규정하였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기탁서의 접수, 확인 등의 사무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하도록 조례 제7조에 명시함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9조부터 제15조에 규정하였음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 (통보내용)
농협 중앙 회 거창 군 지부 장	1. 의견: 제3조제1항제2호 수정 2. 내용 제3조(선정위원회의 구성)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다. <u>농어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등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u>	1. 결과: 미반영 2. 이유: 다목에 이미 포괄적으로 농어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 단체를 표시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음	제출의견 미반영
	1. 의견: 제4조제4항 신설 2. 내용 제4조(답례품의 종류) ①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원칙 ②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상품권 발행 ③ 답례품 우선 선정 기준 ④ <u>답례품 구성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채취된 농축산물 등 특산품을 전체 답례품의 00% 이상으로 한다.</u>	1. 결과: 미반영 2. 이유: 답례품은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되고 결정된 답례품을 기부자가 선택하는 내용으로 특정 분야를 00% 이상으로 정함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됨	
	1. 의견: 제3항제2호라목 신설 2. 내용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기타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라. <u>농어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등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u>	1. 결과: 미반영 2. 이유 고향사랑기금은 이미 법11조에 사용 용도가 정해져있고 기금심의위원회는 기금 계획, 결산, 성과분석, 기금관리 및 운용에 대해 심의하는 위원회이고, 전문성을 요하며 특정단체의 대표성만 가지고 위원 자격을 구성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조례에 명시할 수는 없음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 조문: 제3조 답례품, 제8조 기금의 사용목적

나. 비용발생 요인

- 1)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답례품비 지급
- 2)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등으로 충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제도 시행 초기로 고향사랑기부금 규모 미정

나. 예상 비용

- 1) 2022년 제2회 추경: 56,932천원

(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28,932천원

(나) 홍보비 28,000천원

- 2) 2023년 이후 예산

(가) 금액 미정

(나) 예산소요 사업: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 홍보비, 답례품 구입비, 배송비, 교육, 워크숍
운영비 등

작성자 행정과장 권해도



관련법령 발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89호, 2021. 10. 19.,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

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904호, 2022. 9. 13., 제정]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제9조의2(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금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93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
 - 가. 수입계획액
 - 나. 징수결정액

- 다. 수납액
- 라. 불납결손액
- 마. 미수납액

2. 지출

- 가. 지출계획액
- 나. 전년도 이월액
- 다. 지출계획현액
- 라. 지출액
- 마. 다음 연도 이월액
- 바. 불용액

②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판)

제2절 용어 정비의 실제

1. 어려운 한자어

차. 굳어진 용어는 그대로 쓰기

정비기준

- 쉬운 말로 바꿀 경우 그 법적 의미를 온전하게 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굳이 순화하지 않고 종전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 해당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면 괄호에 한자를 함께 쓴다.

호선(互選)하다

- ‘호선’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그 조직 구성원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다’이다. 어려운 한자어지만 이를 단순히 ‘선출하다’로 바꾸면 누가 뽑는지(선출 주체), 어떤 절차로 뽑는지(선출 방법) 등이 드러나지 않아 선출의 주체와 방법을 추가로 규정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회의 용어로 굳어진 단어이므로 관용을 존중하여 그대로 쓴다.

예)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국어학·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10. 17.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2. 10. 20.

2. 제안이유

- 거창국민여가캠핑장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신규 설치 시설 사용료를 신설하여 캠핑장 이용편의 증진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거창국민여가캠핑장 사용료 기준 변경 및 신설(안 별표 2 제3호다목)

1) 사용료 기준인원 현실화하여 변경

(가) 캐빈하우스: 5명 ⇒ 4명

(나) 전기데크(5미터×5미터): 6명 ⇒ 4명

2) 일반데크를 전기데크로 전환함에 따라 일반데크 삭제

3) 캐빈하우스, 방갈로, 전기데크(5미터×5미터) 사용료 변경

(가) 캐빈하우스: 주중 80,000원 ⇒ 100,000원

(나) 방갈로: 주중 60,000원 ⇒ 80,000원

(다) 전기데크(5미터×5미터)

(1) (현행) 주중 25,000원, 주말·성수기 30,000원

(2) (변경) 주중·주말 30,000원, 성수기 40,000원

4) 신규 전기데크 및 다목적회의실 사용료 기준 신설

(가) 전기데크(6미터×8미터): 주중·주말 40,000원, 성수기 50,000원

(나) 다목적회의실: 시간당 20,000원

나. 사용료 감면 근거 인용조문 정비(안 별표 3)

1) (현행)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변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2조

3) 「지방자치법」 제15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9. 13.~10. 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2014년 조례 제정 후 사용료 인상이 없었으나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련법령 발췌

□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8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 「청소년 활동 진흥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86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① 제10조제2호의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은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43호, 2022. 5. 9., 일부개정]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41호, 2022. 5. 9., 일부개정]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시행 2019. 12. 15.]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89호, 2019. 12. 9., 일부개정.]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10. 17.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2. 10. 20.

2. 제안이유

- 위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임조례 입법례에 맞게 목적조항 변경(안 제1조)

나. 법령개정사항 반영하여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명, 제2조)

1) 청소년위원회 ⇒ 청소년육성위원회

다. 위원의 해촉 신설(안 제4조의2)

라. 자치법규 입안원칙 및 용어순화 등 정비함(제2조·제3조, 제5조~제8조)

1) 인 ⇒ 명, 자 ⇒ 사람, 기타 ⇒ 그 밖에, 회무 ⇒ 업무

2) 군수의 자문기구인 위원회 회의록 작성주체 변경: 위원회 ⇒ 군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9. 13.~10. 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위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명칭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알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함

○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회의록 작성 주체를 위원회에서 군수로 변경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련법령 발췌

□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8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연혁]

□ 「청소년기본법」

[시행 2003. 10. 1.]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13조(지방청소년위원회) ① 청소년육성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自治區를 말한다)에 지방

청소년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5. 12. 29.>

②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조직 기타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 12. 29.>

청소년기본법

[시행 2005. 2. 10.] [법률 제7162호, 2004. 2. 9., 전부개정]

◇개정이유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육성의 기본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규정하고, 종전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청소년활동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별도 제정함으로써 청소년관련법을 체계화하는 한편,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부 칙 <법률 제7162호, 2004. 2.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일전이라도 이를 할 수 있다.

제2조(생략)

제3조(지방청소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본다.

제4조~제6조 (생략)

□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대면회의에 한정한다)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명된 위원이 자료수집 또는 안전검토 등 심사를 하여 이를 위원회에 보고(서면보고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나 거창군의회 의원인 위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하지 않는다.

□ 「거창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총괄부서와성비규정준수 담당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은 최대 4개 위원회까지 위촉할 수 있고, 같은 위원회에서는 최대 3회까지 연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안전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군수는 위원을 위촉할 때 제8조 각 호의 해촉 사유와 제11조의 청렴서약서 제출에 대하여 위촉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판)

제2절 용어 정비의 실제

2. 어려운 한자어

차. 굳어진 용어는 그대로 쓰기

정비기준

- 쉬운 말로 바꿀 경우 그 법적 의미를 온전하게 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굳이 순화하지 않고 종전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 해당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면 괄호에 한자를 함께 쓴다.

개 의(開議)하다

- ‘개 의(開議)’는 ‘안전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다’의 뜻이지만 단순히 구성원이 모여 회의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사정족수(의사 진행에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 인원수)가 충족된 상태에서 회의를 시작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회의 용어이므로 ‘시작하다’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쓴다.

예)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의2제4항)

호 선(互選)하다

- ‘호 선’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그 조직 구성원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다’이다. 어려운 한자어지만 이를 단순히 ‘선출하다’로 바꾸면 누가 뽑는지(선출 주체), 어떤 절차로 뽑는지(선출 방법) 등이 드러나지 않아 선출의 주체와 방법을 추가로 규정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회의 용어로 굳어진 단어이므로 관용을 존중하여 그대로 쓴다.

예)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互選)하고, 위원은 국어학·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10. 17.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2. 10. 20.

2.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1) 인용조문 변경

(가) 법 제10조 ⇒ 법 제10조2(안 제5조)

(나) 영 제7조의2 ⇒ 영 제10조의3(안 제6조)

2) 용어 변경

(가) 관리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5조·제6조)

(나) 사용수익허가 ⇒ 사용허가(안 제15조·제15조의2·제16조·

제17조·제19조·제28조·제30조)

(다) 실경작자 ⇒ 농업인(안 제24조)

나. 조례위임사항 반영(안 제5조제5항)

- 1)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위임
- 2)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기준
 - (가)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 10억, 처분 10억 이상인 재산
 - (나) 1건당 기준면적이 취득 1천제곱미터, 처분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0조의2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10조의3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9. 23.~10. 1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과 용어를 알맞게 변경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호에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제5항을 신설하여 금액과 면적 기준을 명시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1.~6. (생략)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9. (생략)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22.4.21.시행, 2021. 4.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사용·수익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u>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u>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u>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u>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

나 변경하는 경우	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신 설>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신 설>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1. 9.] [대통령령 제28577호, 2018. 1. 9., 일부개정] 다. 수의의 방법에 의한 농경지의 사용·수익 또는 대부자 명확화(제13조제3항제2호 및 제29조제1항제2호) 공유재산인 농경지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자를 <u>중전의 실경작자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으로 명확히 함.</u>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601호, 2022. 4. 20., 일부개정]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2022. 4. 2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2. 4. 20.>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20.>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4. 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 라. 삭제 <2022. 4. 2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 7. 7.] [제목개정 2022. 4. 20.]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이하 “공유재산심의회의”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 3. 31.>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7조의2에서 이동 <2022. 4. 20.>]

부 칙 <대통령령 제32601호, 2022. 4.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3호, 제7조제7항제2호, 제10조의3, 제33조, 제40조, 제78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각 호,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제4조(생략)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2023년 9월 30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제6조(생략)

신구조문 대비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55호, 2022. 2. 18., 타법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01호, 2022. 4. 20., 일부개정]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하생략~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④ (생략)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④ (현행과 같음)

□ 2022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P222

라. 규정방식

1) 위원회의 설치

~ 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 ③~⑤ (생략)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판)

제2절 용어 정비의 실제

3. 어려운 한자어

차. 굳어진 용어는 그대로 쓰기

정비기준

- 쉬운 말로 바꿀 경우 그 법적 의미를 온전하게 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굳이 순화하지 않고 종전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 해당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면 괄호에 한자를 함께 쓴다.

개 의(開議)하다

- ‘개 의(開議)’는 ‘안건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다’의 뜻이지만 단순히 구성원이 모여 회의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사정족수(의사 진행에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 인원수)가 충족된 상태에서 회의를 시작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회의 용어이므로 ‘시작하다’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쓴다.

예)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의2제4항)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10. 17.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2. 10. 20.

2.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개정(2022. 8. 11.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거창군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조항에 위임 법령 인용 조문 추가함(안 제1조)
- 나. 조례로 위임된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의2)
 - 1) 운영비 종목
 - 가)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 나) 사무소 운영 기본경비
 - 다) 사무시설 임차료
 -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 2)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등

가) 군수가 따로 정함

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다. 법령명 약칭 표현 정비(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

나. 예산조치: 2022년 예산 175,825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8. 3.~8. 2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2022. 2. 3. 개정됨에 따라
-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제8조의 2를 신설하여 운영비 지원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거창군체육회 운영비 지원

나. 관련 조문: 안 제8조의2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2026년)
계	175,825	179,341	182,927	186,585	190,316

3. 관련 의견

거창군체육회 운영비는 지금까지 계속 지원되어 왔으나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원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인건비: 139,985천원

1) 사무국장(6급 4호봉) 42,912천원

2) 사무차장(7급 5호봉) 41,578천원

3) 대 리(8급 7호봉) 39,897천원

4) 기타경비 15,598천원

나. 운영비: 35,840천원

다. 2022년도 본예산 편성 기준, 연 2퍼센트 상승 적용

작성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관련법령 발췌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 2. 4., 2020. 12. 8.>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2022. 2. 3.> [전문개정 2016. 2. 3.] [시행일: 2022. 8. 11.]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절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판)

제2절 용어 정비의 실제

4. 어려운 한자어

차. 굳어진 용어는 그대로 쓰기

정비기준

- 쉬운 말로 바꿀 경우 그 법적 의미를 온전하게 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굳이 순화하지 않고 종전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 해당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면 괄호에 한자를 함께 쓴다.

개 의(開議)하다

- ‘개 의(開議)’는 ‘안전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다’의 뜻이지만 단순히 구성원이 모여 회의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사정족수(의사 진행에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 인원수)가 충족된 상태에서 회의를 시작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회의 용어이므로 ‘시작하다’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쓴다.

예)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의2제4항)

호 선(互選)하다

- ‘호 선’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그 조직 구성원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다’이다. 어려운 한자어지만 이를 단순히 ‘선출하다’로 바꾸면 누가 뽑는지(선출 주체), 어떤 절차로 뽑는지(선출 방법) 등이 드러나지 않아 선출의 주체와 방법을 추가로 규정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회의 용어로 굳어진 단어이므로 관용을 존중하여 그대로 쓴다.

예)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互選)하고, 위원은 국어학·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10. 17.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2. 10. 20.

2. 제안이유

- 거창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군의
건전한 체육 활동 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1) 2022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을 정비함(안 제8조~제13조)

1) 신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운영세칙

2) 삭제

(가) 수당, 준용: 개별조례에서 달리 정할 사항이 없으면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거
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용하면 됨

(나)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제29조 중복·재기재로 불필요

한 규정으로 조례에 정할 필요없음. 법제처 정비대상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3조

나. 예산조치: 2022년도 기금 1,098,307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9. 22.~10. 1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2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4조 제3항에서 존속기한을 넘어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은 2022. 12. 31.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나 체육분야 유일한 기금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군 체육진흥·발전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므로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 의안 제출 전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의안 제출 후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절차상 오류를 범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체육진흥기금 용도(사업 또는 활동)

나. 관련 조문: 안 제5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총 비용(a - b)		1,094	1,094	1,094	1,094	1,094
수입	예치금	1,098	1,094	1,094	1,094	1,094
	이자수입	16	20	20	20	20
	소계(a)	1,114	1,114	1,114	1,114	1,114
지출	사업	20	20	20	20	20
	소계(b)	20	20	20	20	20

3. 관련 의견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우수 선수 육성사업 등에 지원
하고, 나머지 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하여 운용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수입

1) 기금 예치금 이자수입 20백만원 정도

2) 2023년부터 연 2퍼센트 적용, 이자율 변동에 따라 수입액은
변동 가능

나. 지출: 우수선수 육성사업 매년 20백만원 집행

작성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

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제9조의2(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금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93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
 - 가. 수입계획액
 - 나. 징수결정액
 - 다. 수납액
 - 라. 불납결손액
 - 마. 미수납액
2. 지출

- 가. 지출계획액
- 나. 전년도 이월액
- 다. 지출계획현액
- 라. 지출액
- 마. 다음 연도 이월액
- 바. 불용액

②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의견17-0201

질의제목 : 대전광역시의회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 관련)

관련문서 :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실 - 2002(2017.7.20.)

1. 질의요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지?

2. 의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을 선택하여 공포·시행하도록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3. 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이하 “대전시조례”라 함) 제3조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대전시조례안”이라 함)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대전시조례안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공포한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산정되어 5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조례·규칙의 시행일은 제정·개정된 조례·규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관한 규정입니다(「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p. 201. 참조). 대전시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을 하면서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현행 2020년에서 2025년까지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의 효과가 공포한 날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시점이 대전시조례안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2025년까지 연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전시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까지로 규정하면서, 그 개정조례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공포·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은 그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 전체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과 같다고 볼 것이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한 취지는 기한이 다다를 때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 기금 근거의 효력을 잃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법령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미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은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 규정의 형태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7. 5. 18. 의견제시 17-0101 참조), 만약 대전시조례안 부칙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월 1일부터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게 되면 대전시조례가 사실상 2020년 12월 31일에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된 법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전시조례를 개정하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을 선택하여 공포·시행하도록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하 생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u><삭 제></u> 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원안 제1항) ○ ○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법에 따라 설치되는 것임에도 조례에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 위원회의 설치 근거에 대한 법적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u>안 제6조제1항의 삭제</u>를 권고함
--	--	--

□ 2022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P220 P222

라. 규정방식

1) **위원회의 설치:** ~법령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재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나,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가 되는 것임에도 조례에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 위원회의 설치 근거에 대한 법적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법령에서 위임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 두도록 한다.

~ 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거창군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판)

제2절 용어 정비의 실제

5. 어려운 한자어

차. 굳어진 용어는 그대로 쓰기

정비기준

- 쉬운 말로 바꿀 경우 그 법적 의미를 온전하게 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굳이 순화하지 않고 종전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 해당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면 괄호에 한자를 함께 쓴다.

개 의(開議)하다

- ‘개 의(開議)’는 ‘안전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다’의 뜻이지만 단순히 구성원이 모여 회의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사정족수(의사 진행에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 인원수)가 충족된 상태에서 회의를 시작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회의 용어이므로 ‘시작하다’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쓴다.

예)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의2제4항)

호 선(互選)하다

- ‘호 선’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그 조직 구성원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다’이다. 어려운 한자어지만 이를 단순히 ‘선출하다’로 바꾸면 누가 뽑는지(선출 주체), 어떤 절차로 뽑는지(선출 방법) 등이 드러나지 않아 선출의 주체와 방법을 추가로 규정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회의 용어로 굳어진 단어이므로 관용을 존중하여 그대로 쓴다.

예)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互選)하고, 위원은 국어학·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10. 17.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2. 10. 20.

2. 제안이유

- 거창국민체육센터 내 볼링공 수리서비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및 감경기준을 조정하는 등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시로 변경가능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안 제3조·제6조·제12조의2)

- 1) 운영시간과 휴무일
- 2) 볼링공 수리서비스 수수료

나. 볼링관련 제도 개선 및 신설

- 1) 볼링공 수리서비스 지원 신설함(안 제12조의2)
- 2) 볼링장 월 사용 기준 현행에 맞게 변경함(안 별표 1)
(현행) 1일 2시간 ⇒ (변경) 1회 4게임

3) 볼링화 대여료 신설함(안 별표 1)

다. 사용료 감경기준 현행에 맞게 조정(안 별표 2)

1) 신설: 감경을 100분의 30은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에는 적용하지 않음

2) 사유: 국민체육센터 사용료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에 따라 차등 징수함에 따라 100분의 30 감경과 같은 효과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2)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3) 「지방자치법」 제154조·제15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8. 30.~9. 1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볼링회원 및 이용자의 증가로 볼링장 내 볼링공 수리서비스

의 수요는 증가했으나 현재 지원 기준이 없어 인근 도시나 온라인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음

-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의2에 볼링공 수리서비스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수리에 필요한 노무비와 재료비를 지원하고 이용자들은 수수료 내고 시설 내에서 수리할 수 있게 할 계획임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 운영시간과 휴무일은 수시로 변경 가능하므로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함
- 많은 군민이 체력을 단련하여 생활에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생활체육의 개발과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련법령 발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81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9. 29.] [대통령령 제32018호, 2021. 9. 29., 타법개정]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2. 읍·면·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

- 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 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 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 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 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 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심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10. 1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10. 20.

2. 제안이유

-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 교육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근거법령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대 상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사장 구인모)
- 사 업 비 : 2,915백만원
 - 2023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23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균 비	기 타
기본재산 증자 및 장학사업	2023년	2,915	2,915			2,915	

- 사업내용
 - 내실 있는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장학기금 확대 조성(2,250백만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및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665백만원)

나. 부서의견

- 교육도시 거창의 위상에 걸맞은 장학사업 확대 운영 추진을 위해 장학기금 확대조성 필요(장학기금 100억 → 200억)
- 거창의 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여 지역인재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거창군을 빛낼 훌륭한 인재들을 육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검토의견

- 장학기금 200억 달성은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으로써 매년 2,250백만원씩 4년간 군비 90억원을 출연할 계획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거창군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 교육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인재를 글로벌 인재로 양성함으로써 교육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 출연기관 현황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근거	법 률 :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55-940-8812 홈페이지 : www.gcdream.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 2005. 12. 16. - 장학기금 100억원 달성 : 2009년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직원현황 (‘22. 9.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0명		0명		0명	
임 원 (‘22. 9.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구○○	거창군수			재직기간(당연직)
	상임이사	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거창군협의회장			2년(21.12.26. ~ 23.12.25.)
	이 사	이○○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재직기간(당연직)
	이 사	조○○	거창군산림조합장			2년(20.12.24. ~ 22.12.23.)
	이 사	이○○	前 거창군여성단체협의회장			2년(21.12.26. ~ 23.12.25.)
	이 사	이○○	前 거창교육지원청 과장			"
	이 사	구○○	前 (사)한농연 거창군연합회장			"
	이 사	이○○	한국예총 거창지회장			2년(20.12.24. ~ 22.12.23.)
	이 사	최○○	거창군새마을회장			"
	이 사	백○○	거창한뉴스 대표			"
	이 사	정○○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2년(21.12.26. ~ 23.12.25.)
	이 사	염○○	(합)기산건설 대표			"
	이 사	마○○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이 사	강○○	거창빼재오미자 대표			"
	이 사	이○○	(사)거창시장번영회장			"
	감 사	이○○	거창군학원연합회장			"
	감 사	정○○	대경회계사무소			"
주요기능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필요한 지원					
자본금 (단위:백만원)		10,973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665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재무현황 (백만원) 21. 12. 31.기준	자산 11,031 (자산 총액)
	예산액	1,464	1,562	1,683		부채 58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735	725	725		자본 10,973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1. 12. 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045				1,031	14



관련법령 발췌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국 인구교육과) (시행일 : 2021.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학사업 등을 시행할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의 설립과 그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삭제<2021.11.24.>

제4조~제6조 삭제<2019.4.3.>

제7조(사업) ① 장학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3. 교육여건 개선사업

4. 국내외 청소년과의 교류사업(2021.11.24.)

5.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장학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창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
3.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경영을 통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 제10조 삭제<2021.11.24.>

제11조(행정지원) 군수는 장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장학회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장학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삭제<2021.11.24.>

제13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지도·감독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장학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21.11.24.)

제14조(출연금의 반환) ① 군수는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관련 임원의 교체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② 장학회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의 반환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조신설 2021.11.24.)

부칙 <전부개정 2011.01.05, 조례 제20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된 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8호 개정 2014.12.31.)

제1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를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로 한다.

부칙(조례 제2496호 201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682호 일부개정 2021.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국 지 방 세 연 구 원 출 연 심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10. 1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10. 20.

2. 제안이유

- 2023년도 거창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거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출연개요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 대 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사업내용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나. 출연금 요구액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4,172천원
 - 2023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사업기간	2022년 예산액	2023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군 특	도 비	군 비	기 타
2022년	4,114천원	4,172천원	4,172천원	0	0	4,172천원	

※ 산출기초 : '21년 결산 보통세 34,770,183천원 $\times$ 1.2 / 10,000

다. 부서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내지 제152조, 동법 시행령 제94조

나. 기 타

- 출연기관 현황 붙임
- 출연금 배정 협조공문 붙임

5. 검토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의 발전을 선도하는 한국의 대표 연구기관으로서 지방재정 분권을 선도하는 전문 연구, 지방 세제·세정 발전 정책 지원, 지방세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만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출연근거가 명확하며
-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 출연기관 현황 】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02-2071-2789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연	
인원현황 (2022년 8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임시직·파견	
	85명		69명 (원장1, 부원장1, 연구위원22, 연구원17, 조사분석직6, 전문직3, 사무직18, 시설직1)		16명 (위촉연구원5, 파견공무원9, 청사관리원2)	
임원 (2022년 8월 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백재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20.12.22. ~ 2023.12.21.	
	부이사장	오언석	서울 도봉구청장		2022.02.28. ~ 2023.02.27.	
	이사	배진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연직	
	이사	진명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당연직	
	이사	김선조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22.02.28. ~ 2023.02.27.	
	이사	안승대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22.02.28. ~ 2023.02.27.	
	이사	김기홍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		2022.02.28. ~ 2023.02.27.	
	이사	황명석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2022.02.28. ~ 2023.02.27.	
	이사	이충우	경기 여주시장		2022.02.28. ~ 2023.02.27.	
	이사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2022.02.28. ~ 2023.02.27.	
	이사	김재욱	경상북도 칠곡군수		2022.02.28. ~ 2023.02.27.	
	이사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2021.02.28. ~ 2023.02.27.	
	감사	이현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연직	
	감사	김능식	오산시 부시장		2022.02.28. ~ 2024.02.27.	
주요기능	지방세입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88,151 (설립이후 2021년까지 지자체가 출연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재무현황 (백만원) ‘21.12.31기준	20,999 (자산 총액)
	예산액	10,855	11,928	14,200		부채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8,972	10,821	11,160		자본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1.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2,364				11,093	1,282

참고 3

예산편성 협조 공문

인쇄 : 방종현 / 재무과 (2022-09-20 11:03:31)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경 상 남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3833호(2022. 9. 16.)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자치단체별 출연금 확정내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시·군에서는 2023년도 예산편성안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년 출연금 집계표 1부. 끝.

경 상 남 도



수신자 시군 세정부서

주무관 정태우 세정담당 강병문 세정과장 전결 2022. 9. 16.
협조자 심상철

시행 세정과-11781 (2022. 9. 16.) 접수 재무과-23507 (2022. 9. 16.)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암대로 300, 세정과 (사림동) / <http://gyeongnam.go.kr>

전화번호 055-211-3717 팩스번호 055-211-3719 / boy1466@korea.kr / 부분공개(5)

자연의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2023. 5. 4. - 6. 3.)

문서관리카드 재무과-23507 1/1

2023년 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 집계표

(단위 : 천원)

자치단체명	① '21년 결산 지방세	'21년 결산 보통세			'23년 출연금		
		② 소계(③+④)	③ 현년도	④ 과년도	⑤ '22년 정산액	⑥ '23년 출연분 (⑥+1,2/10000)	⑦ '23년 출연금 (⑦=⑥+⑤)
전국합계	110,273,769,295	103,195,082,268	102,950,282,105	244,800,162	0	12,383,405	12,383,405
경남	경남도 소계	6,043,118,622	5,536,153,501	5,518,670,090	17,483,411	0	664,337
	경남도 본청	3,484,185,282	3,007,882,817	3,026,092,874	-18,210,057	0	360,946
	창원시	821,117,731	790,458,736	780,527,418	9,931,318	0	94,855
	진주시	255,408,161	255,408,161	251,001,497	4,406,664	0	30,649
	통영시	67,270,838	67,270,838	65,526,636	1,744,202	0	8,072
	사천시	94,383,001	94,383,001	93,065,058	1,317,943	0	11,326
	김해시	390,255,939	390,255,939	383,317,970	6,937,969	0	46,831
	밀양시	98,827,346	98,827,346	97,706,776	1,120,570	0	11,859
	거제시	149,903,442	149,903,442	149,543,676	359,766	0	17,988
	양산시	318,280,798	318,277,137	313,145,016	5,132,121	0	38,193
	의령군	24,903,190	24,903,190	24,632,107	271,083	0	2,988
	함안군	73,309,664	73,309,664	72,258,431	1,051,233	0	8,797
	창녕군	48,249,116	48,249,116	47,672,790	576,326	0	5,790
	고성군	42,016,310	42,016,310	40,989,570	1,026,740	0	5,042
	남해군	24,343,295	24,343,295	24,196,691	146,604	0	2,921
	하동군	27,834,060	27,834,060	27,457,104	376,956	0	3,340
	산청군	29,361,988	29,361,988	29,033,777	328,211	0	3,523
	함양군	29,093,318	29,093,318	28,725,201	368,117	0	3,491
	거창군	34,770,183	34,770,183	34,171,515	598,668	0	4,172
	합천군	29,604,960	29,604,960	29,605,983	-1,023	0	3,552



관련법령 발췌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거창문화재단 지원 출연심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10. 1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10. 20.

2. 제안이유

-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차질 없는 문화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근거법령 : 지방출자·출연법 제20조,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 대 상 : (재)거창문화재단(이사장 구인모)
- 사 업 비 : 1,154,610,000원
 - 2023 예산편성 요구사항

사업기간	2022년 예산액	2023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군 비	기 타
2023년	976,000,000	1,154,610,000	1,154,610,000	-	-	1,154,610,000	

- 사업내용

- 문화재단 사무국 인건비(직원 6명, 기간제 5명) 지원
- 문화재단 사무국 경상경비(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지원

나. 부서의견

-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2017년 설립이 후 운영 7년차에 접어드는 거창문화재단은 각종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및 거창국제연극제, 한마당대축제 기획·운영 업무를 비롯하여
- 지역문화 발전과 군민들의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거창문화센터 관리 등을 위한 예산을 출연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제1항, 제20조 제1항
-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 제2항

나. 기 타

- 출연금 개요 :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 최근 3년간 운영비 지원현황

5. 검토의견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2017. 1. 4. 문화재단을 설립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함

【 출연기관 현황 】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설립근거	법률 :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전화번호 : 055-940-8460 홈페이지 : www.gccf.or.kr
주요연혁	법인설립허가 : 2017. 1. 4.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22. 9.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7명		2명	15명(파견7 포함)
임원 (‘22. 9.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구○○		‘18. 07. 01. ~
	상임이사		공석	
	비상임이사	조○○	문화관광과장	‘21. 03. 08. ~
		하○○	경남도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21. 02. 18. ~ ‘23. 02. 17.
		안○○	사)아림예술제위원회 위원장	‘21. 02. 18. ~ ‘23. 02. 17.
		이○○	한국예총거창지회 회장	‘21. 02. 18. ~ ‘23. 02. 17.
		하○○	거창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21. 02. 18. ~ ‘23. 02. 17.
		신○○	대전광역시미술대전 심사위원	‘21. 02. 18. ~ ‘23. 02. 17.
		이○○	사)한국서각협회 이사	‘21. 02. 18. ~ ‘23. 02. 17.
		권○○	거창미술협회사무국 지부장	‘21. 02. 18. ~ ‘23. 02. 17.
		김○○	주)거창중앙신문 대표	‘21. 02. 18. ~ ‘23. 02. 17.
		김○○	거창문화원 이사	‘21. 02. 18. ~ ‘23. 02. 17.
		김○○	前국제로타리3590지구 사무국장	‘21. 02. 18. ~ ‘23. 02. 17.
		유○○	거창예술강사협의회 회장	‘21. 02. 18. ~ ‘23. 02. 17.
	감사	정○○	대경세무회계사무소 대표	‘21. 02. 18. ~ ‘23. 02. 17.
		윤○○	재무과장	‘22. 07. 14. ~
주요기능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지역문화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지역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문화예술단체 협력 및 연계, 교류에 관한 업무 ·거창한마당대축제 및 국제연극제 기획, 운영 ·문화공연 기획 및 운영 ·문화예술관련 국가, 경상남도, 거창군의 위탁,대행,보조사업 ·그 밖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50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976백만원('22.)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재무현황 (백만원) '21. 12. 31.기준	자산	1,086 (자산 총액)
	예산액 ²⁾	2,656	2,938	3,937		부채	825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³⁾	2,342	2,624	3,620		자본 ¹⁾	261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1. 12. 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197				2,069		93.9

참 고 사 항

1 문화재단 운영지원 사업 (인건비,경상경비-출연금)

- 사업목적 :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한 차질 없는 문화재단 운영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장소 : 거창문화재단 일원(거창문화센터)
- 사업비 및 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내역	2023년 예산액	2022년 편성액	증감	증감사유
합계		1,154,610	976,000	178,610	
인건비	소 계	519,435	428,995	90,440	
	단장,단원	328,185	294,068	34,117	근로기준법에 따른 반영
	기간제근로자	191,250	134,927	56,323	물가상승(초·저임금) 반영
경상경비	소 계	635,175	547,005	88,170	
	복리후생비	51,880	44,800	7,080	
	일반운영비	177,120	208,330	△31,210	창의도시세,당직비 등감액
	공공요금및제세	157,632	139,332	18,300	전기요금, 공공요금 증액
	시설유지관리비	78,000	90,000	△12,000	홈페이지 중 시설물감사 반영
	회의운영비	13,543	13,543		
	여비교통비	30,000	36,000	△6,000	국내여비 감액
	업무추진비	12,000	12,000		
	관서업무비	3,000	3,000		
	자산취득비	112,000		112,000	관공차량장장비구매증액

※ 거창문화재단 운영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
지원금액	906,300	691,000	843,000	976,000	1,154,610
전년대비증감	증) 362,170	감) 215,300	증) 152,000	증) 133,000	증) 178,610
예산과목	법정운영비	출연금(306-01)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시행일 : 2016.11.23.)

- 제4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10. 12.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2. 10. 20.

2. 제안이유

- 「거창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거창군가족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일(2022.12.31.) 도래와 관련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재위탁 운영하고자 함
- 이에 대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주요사무	비고
거창군가족센터	거창읍 강남로170	214.61 m ²	▶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사무 : 거창군가족센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

- 위탁기간 : 2023. 1. 1. ~ 2027. 12. 31.(5년간)
- 선정방법 : 공개모집(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선정기준
 - 수탁자의 적격성, 센터운영 능력 등을 고려
 - 심의위원회의 심사평가

다. 그간 운영 상황

- 수탁기관 : 거창기독교청년회(거창YMCA)
- 위탁기간 : 2019. 1. 1. ~ 2022. 12. 31.(3년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거창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나. 향후계획

- 민간위탁법인 선정 공고 및 접수 : 2022년 11월
- 민간위탁심의위원 구성 : 2022년 12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정 : 2022년 12월
- 위·수탁협약 체결 : 2022년 12월
- 위탁업무 개시 : 2023년 1월

5. 검토의견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1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1항에 따라 거창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 중임

- 센터에서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등 「건강강가정 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사항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각종 상담관련 전문성과 효율성을 요하는 사업으로써 「건강 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 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거창군가족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민간위탁 중인 거창군가족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른 위탁기관 공모를 통해 경영능력과 전문성 등을 갖춘 위탁자를 선정, 「거창군가족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 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2022년 가족사업안내 / 여성가족부 지침

II, 추진배경

- 거창군가족센터 수탁기간 만료 : 2022. 12. 31.

III, 추진방향

- 위탁기준과 절차를 공개하는 공개 모집으로 투명성 확보
- 가족센터 포괄적 제공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능력 고려
- 선정기준의 합리적 수립과 절차의 객관성 강화로 최적의 위탁기관 선정
- 전문적인 심사위원 구성으로 심사수준 및 심사결과의 공신력 제고

IV 가족센터 현황

□ 위탁기관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비 고
거창군가족센터	거창읍 강남로 1길 170 1층 (구 보건소)	214.61㎡	

□ 현 위탁체 현황

수탁기관	대 표	시설장	주 소	비고
거창기독교청년회 (거창YMCA)	정병문	조미금	거창읍 강변로 87	

- ※ 최초 운영 : 2008. 1. 31. / 거창기독교청년회(거창YMCA) 위탁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 2019년 예산 : 522,169천원
- 위탁사무 :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시설관리 전반

V 세부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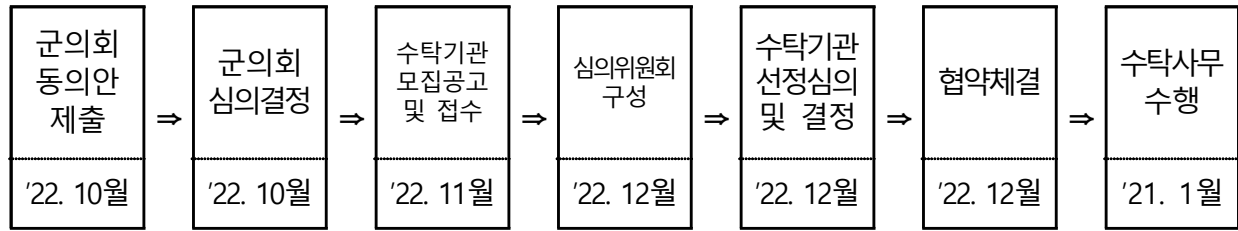
□ 위탁기간 : 2023. 1. 1. ~ 2027. 12. 31(5년간)

□ 위탁방법 : 공개모집(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위탁내용

- 위탁사무 : 거창군가족센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
 - 위탁업무 : 건강가정법 제35조제1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4항 각 호의 업무와 그 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위탁시설 : 거창군 가족센터 시설물(강남로1길 170, 214.61㎡)

□ 추진절차



□ 세부추진일정 및 내용

○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2. 11. 14.(월) ~ 2022. 11. 23.(목) / 10일간
-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게시
- 접수기간 : 2022. 11. 15.(화) ~ 2022. 11. 24.(금) / 10일간
- 접수장소 : 행복나눔과 여성보육담당
- 접수방법 : 근무시간내 직접방문 접수 (우편, 택배 인터넷접수 불가)
- ※ 세부 일정은 추후 변경 가능
- 제출서류

- ① 거창군 가족센터 수탁신청서
- ② 신청자격 입증서류 각 1부
 - 【법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 【단체】 단체등록증 및 회칙(규약)사본 각1부, 대표자 인감증명서
 - 【학교】 등록증사본, 학교의 회칙 또는 규약, 인감증명서
- ③ 법인(단체)의 조직 및 운영현황 관련서류 (별도서식)
- ④ 대표자 및 센터장(내정자)의 자격 및 경력 증명 서류
- ⑤ 사업운영실적 (별도서식)
- ⑥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 예산·수입·지출계획서 포함 (별도서식)
- ⑦ 서약서(별도서식)
- ⑧ 개인정보이용 및 사전동의서
- ⑨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심사 및 선정 ※ 별도계획 수립 시행

- 심사기간 : '22. 11. 28.(월) ~ '22. 12. 9.(금) / 12일간
- 심사방법 : 선정 심사 위원 구성·심사
 - ▶ 구성인원 : 7명이내(위원장 포함)
 - ▶ 위원구성 : 관련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 위 원 장 : 위원 중에서 지명
- 심사방법 : 서면 및 면접심사
 - ▶ 서 면 : 선정기준에 따라 제출자료 심사
(면접심사 3일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심사자료 사전 송부)
 - ▶ 면 접 : 신청기관 대표자 참석(센터장 참석가능), 운영계획 설명
- 심사항목

항목(5개부분)	점수(100점)	심사내용(16개항목)
1. 법인 적격성	10	- 유형 및 설립목적 - 적격성
2. 재정능력 및 공신력	20	- 보유자산(부동산, 동산 구분) - 지역사회내 공신력 제고방안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
3. 사업운영·실적능력	30	- 기관대표의 이사회의 적합성 - 운영실적, 전문성 -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4. 운영계획의 적정성	30	-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사업운영의 전문성, 재정책충방안의 타당성 - 지역사회 자원원방안
5. 센터장 전문성	10	- 센터장의 전문성과 운영의지

- 선정방법
 - ▶ 위원별 총점을 평균점으로 환산하여 최고 점수를 받은자로 결정
 - ▶ 동점의 경우 심사기준의 비중이 큰 항목에서 점수를 많이 받은 기관
 - ▶ 단독 신청할 경우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운영자로 결정하고 6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 재공고 경우 : 신규 위탁체 선정시까지 현재 운영법인의 계약 연장

□ 결정·통보 및 위탁계약 체결

- 계약체결 : 2022. 12. 12. (월) ~
 - 위탁기간 : 2023. 1. 1. ~ 2027. 12. 31.(5년)
- 계약방법 : 위탁운영 약정서에 따라 계약 체결
- 계약조건 :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 고용 유지

VI 행정사항

- 모집공고 및 접수 : 2022. 11. 14.(월) ~ 2022. 11. 24.(목)
- 심사계획 수립 및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2022. 11. 28.(월)한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022. 12. 9.(금)한
- 위탁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2022. 12. 24.(목)한
- 위탁기관 선정결과 보고 : 2022. 12. 30.(금)한

- 거창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관련법령 발췌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 ④ 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7.>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5. 19.>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8.>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위치)

-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센터를 통합하여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이하 “건강가정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다문화가족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② 센터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거창읍 강남로1길 170에 둔다.

제3조(업무 및 시설)

- ① 센터는 건강가정법 제35조제1항 및 다문화가족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한다.
- ② 군수는 센터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10. 1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10. 20.

2. 제안이유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일(2022.10.23.) 도래하여 당초 `22. 7. 26.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에 따라 신규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 `22. 8. 11. ~ 10. 5.까지 총 3차 모집공고 실시에도 신규 수탁자 부재하고 기존수탁자 재협약 의사 표명(`22. 10. 11.)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함
- 이에 대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탁시설 현황

명칭	위치	부지면적 (연면적)	주요시설	비고
거창군립 노인요양 병원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180	4,283m ² (3,007m ²)	▶ 지하1층 : 기계실, 보일러실, 발전실 ▶ 1층 : 외래진료실, 물리치료실, 약제실, 행정실, 진단검사실 ▶ 2, 3층 : 간호사실, 입원병실 ▶ 4층 : 치매안심병동, 식당 등	126병상/ 직원59명/ 의료장비 및 물품 325종 2872개

나. 그간 운영 상황

- 수탁기관 : 의료법인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
- 위탁기간 : 2017. 10. 23. ~ 2022. 10. 22.(5년간)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방법 변경

당 초	변 경
수탁자 신규 모집 공고	재위탁

라. 재위탁 내용

- 위탁사무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병원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
- 위탁기간 : 2022. 11. ~ 2026. 10. 22.(4년정도)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에 의거 재
위탁기간 20년을 넘을 수 없음
- 위탁방법 : 재위탁(재위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나. 향후일정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연장 협의 : 2022. 10.
 - ※ 위·수탁계약서 제19조[계약만료 및 해지시 조치] : 계약만료

된 경우 병원직원 및 환자 등 제반사항을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한다.

- 민간위탁 관련 군의회 동의안(변경) 제출 : 2022. 10.
- 민간위탁 관련 군의회 심의 결정: 2022. 10.
- 재위탁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22. 11.
- 위·수탁협약 체결 및 업무개시 : 2022. 11.

5. 검토의견

- 2022. 7. 26.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에 따라 2022. 8. 11.~10.5.까지 3차례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지원기관이 없어 기존수탁자인 의료법인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요양병원 운영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치매관리법」 제16조의 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붙임 1]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재위탁 추진 계획

민간위탁 중인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경영능력과 전문성 등 재위탁 선정 평가를 통해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I, 관련근거

- 「치매관리법」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설치·운영)제1항

II, 일반 현황

□ 위탁기관 현황

- 위탁기관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180

병상수	대지 면적	연면적
126병상(27실)	4,283m ²	3,007m ²

- 보유장비 및 기구 : 325종 2,872개

□ 그 간 위·수탁 추진현황

구분	기 간	운영 기관
1차	2006. 10. 23. ~ 2007. 10. 22.(1년)	의료법인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
2차	2007. 10. 23. ~ 2017. 10. 22.(10년)	의료법인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
3차	2017. 10. 23. ~ 2022. 10. 22.(5년)	의료법인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

□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방법 변경

당 초	변 경
수탁자 신규 모집 공고	재위탁

※ 사유 : 수탁자 모집공고 '22. 8. 11. ~ 10. 5. 총 3차 실시 → 신규위탁자 부재

III 추진일정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연장 협의 : 2022년 10월
 - ※ 위·수탁계약서 제19조[계약만료 및 해지시 조치] : 계약만료 된 경우 병원직원 및 환자 등 제반사항을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한다.
- 민간위탁 관련 군의회 동의안(변경) 제출 : 2022년 10월
- 민간위탁 관련 군의회 심의 결정: 2022년 10월
- 재위탁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22년 11월
- 위·수탁협약 체결 및 업무개시 : 2022년 11월

IV 세부추진 계획

- ☐ **위탁기간 : 2022. 11.~ 2026. 10. 22.[4년정도]**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에 의거 재위탁기간 20년을 넘을 수 없음
- ☐ **위탁기관 : 의료법인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
- ☐ **위탁방법 : 재위탁(재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수탁기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 선정
 - 인력 및 시설·장비의 적정성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
 - 지역사회 기여도 등
- ☐ **위탁내용**
 - 위탁사무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병원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
 - 위탁업무(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입원 진료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 그 밖에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

○ 수 익 금 : 병원운영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재투자

□ 운영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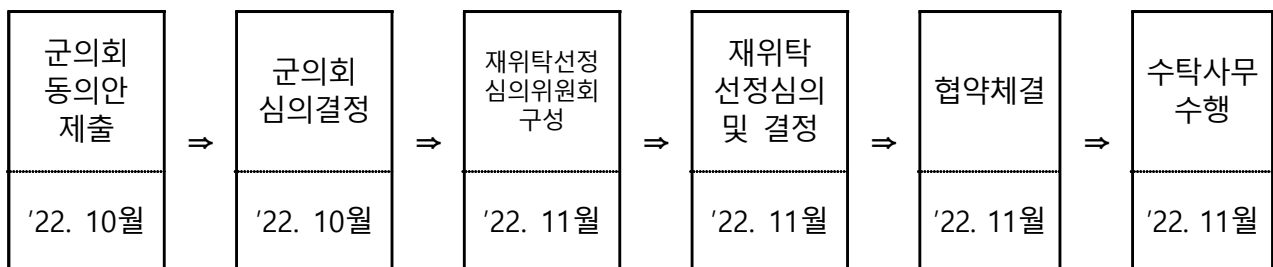
○ 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

※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재위탁기간은 4년으로 사업의 전문성 및 연속성 부여

○ 기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따름

□ 추진절차



□ 세부추진일정 및 내용

○ 「거창군 재위탁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근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 구성시기 : 2022년 10월 중
- 구성인원 : 6명 이상 9명 이하
 - 당연직 : 부군수, 재무과장, 행복나눔과장, 보건소장
 - 위촉직 : 2~5명(병원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 임 기 :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한하며, 심의 후 자동 해촉
- 주요기능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재위탁 선정 심사

○ 「거창군 재위탁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2년 11월 중
- 장 소 : 부군수실
- 참석대상 : 거창군 재위탁 선정심의위원

- 심의내용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재위탁을 위한 심사
- 제안설명 : 대표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가 20분 이내 설명
- 운영방식 : 서면심사 및 대면심사 후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의결
- 재위탁 여부 공개 : 거창군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당일
- 위·수탁 협약체결
 - 협약시기 : 2022. 11월
 - 협약기간 : 2022. 11. ~ 2026. 10. 22.(4년정도)
 - 협약내용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

V 행정사항

- 민간위탁 관련 군의회 변경 동의안 제출 : 2022년 10월
- 민간위탁 관련 군의회 심의 결정: 2022년 10월
- 재위탁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22년 11월
- 재위탁 협약 체결 및 업무 개시 : 2022년 11월 중

[붙임 2]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보건소장 이정현



치매관리법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⑤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공립요양병원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부도, 파산, 해산,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 의료업에 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공립요양병원의 위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행정과)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보건소)

제4조(설치·운영) ① 군수는 노인요양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계약갱신 할 수 있다.(개정 2005.10.5)(2012.11.07.)

1. 의료법인(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및 종합병원을 2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
 3. 의사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10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군수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노인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3천만원 이하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10. 5)

-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할 경우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사전승인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등의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군수 명의로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개정 2005.10. 5)(개정 2012.11.07.)
- ④ 노인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보건소)

제2조(위탁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미리 위탁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5.10. 5)(개정 2008. 1. 1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① 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

1. 노인성 질환자
2. 만성질환자
3.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10. 12.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2. 10. 20.

2. 제안이유

-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위탁기간이 2022. 12. 31. 만료됨에 따라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거창군 엘리트체육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엘리트체육의 전문성을 갖춘 거창군체육회에 재협약하여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위탁대상 :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나. 위 치 : 거창군 관내
다. 수탁기관 : 거창군체육회
라. 사 업 비

(단위: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안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317,500	317,500	317,500	330,000

마. 사업내용

○ 대회참가비, 훈련비, 용품지원비, 코치 인건비 등

○ 대상종목

- 배드민턴 : 창남초등학교, 거창중학교, 거창송강기고등학교

- 역 도 : 대성중학교, 거창대성일고등학교

- 축 구 : 거창중앙고등학교

- 지 도 자 : 배드민턴, 역도, 사격, 그 외 1~2종목 배치

※ 지원 종목은 학교 운동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사. 재협약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제8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나. 향후계획

○ 민간위탁 사무처리 평가 및 재위탁계획 수립 : 2022. 9. 13.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 2022. 9. 27.

- 심의내용 : 민간위탁사무 재협약 적정성

- 심의위원 : 6명(군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체육계, 공무원)

- 심의결과 : 6명 전원 재협약 동의

○ 민간위탁(재협약) 군의회 동의 : 2022. 10.

○ 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2. 12.

5. 검토의견

-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제8조에 따라 체육지도자,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엘리트 운동부 육성사업은 우수선수의 과학적·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거창군의 경기단체를 육성하고 우수선수와 지도자를 발굴하여 각종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거창군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임
- 체육 분야의 전문성과 능률성이 있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운영계획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거창군체육회에서 위탁 운영중인 엘리트 운동부 육성사업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재위탁 운영 계획입니다.

I 큰 거

-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제8조(경비의 지원)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제9조(협약체결 등)

II 개 요

- 사업비

(단위: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안	비고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317,500	317,500	317,500	330,000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
- 재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 3년간
- 수탁자 : 거창군체육회
- 위탁사무 : 대회 참가비, 훈련비, 용품비, 코치 인건비 등
 - 배드민턴 : 창남초등학교, 거창중학교, 거창승강기고등학교
 - 역도 : 대성중학교, 거창대성일고등학교
 - 축구 : 거창중앙고등학교
 - 지도자 배치 : 배드민턴, 역도, 사격, 그 외 1~2종목(육상 등)
- ※ 지원 종목은 학교 운동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수 및 코치현황

○ 배드민턴부

구 분	선 수 (명)	창남초				거창중				승강기고			
		소계	4년 미만	5년	6년	소계	1년	2년	3년	소계	1년	2년	3년
2020	25	12	7	1	4	5	3	0	2	8	2	3	3
2021	24	12	8	3	1	7	3	4	0	5	0	2	3
2022	25	13	9	2	2	7	1	2	4	5	1	3	1
창 단		창단 : 2001. 11. 코치 : 유성철(교육청) 감독 : 황대현(교사)				창단 : 2004. 4. 코치 : 정용진(교육청) 감독 : 서경달(교사)				창단 : 2011. 11. 코치 : 김주휘(거창군) 감독 : 박호식(교사)			

○ 역도부

구 분	선 수 (명)	대성중				대성일고			
		소계	1년	2년	3년	소계	1년	2년	3년
2020	10	6	4	1	1	4	3	1	0
2021	14	8	3	4	1	6	2	3	1
2022	15	9	2	3	4	5	1	2	2
창 단		창단 : 2013.03.02 코치 : 이형섭(교육청) 감독 : 이귀태(교사)				창단 : 2017. 6월 교기지정 코치 : 이창준(거창군) 감독 : 김동후(교사)			

□ 연도별 대회참가 결과

○ 배드민턴부

구 분	창남초		거창중		승강기교	
	참가내역	참가결과	참가내역	참가결과	참가내역	참가결과
2020	▶ 전국여름철대회	2회전탈락	▶ 전국봄철대회 ▶ 전국중고대회	3승3패 탈락 1회전탈락	▶ 전국봄철대회	3승1패 탈락
2021	▶ 전국봄철대회 ▶ 경남초중체육대회 ▶ 전국초등화장기대회	1승5패 탈락 단체전 금 단체전 동	▶ 전국중고대회 ▶ 전국봄철대회 ▶ 전국가을철대회 ▶ 경남초중체육대회	1회전 탈락 1승5패 탈락 2승4패 탈락 단체전 금	▶ 전국중고대회 ▶ 전국봄철대회 ▶ 경남도민체전	1회전탈락 1회전탈락 단체전 금
2022	▶ 전국소년체전 ▶ 경남초중학생체육대회 ▶ 전국학교대항전	동2개(남,여) 금2개(남,여) 16강 진출	▶ 전국종별대회 ▶ 높을고장배 전국종별대회 ▶ 대한배드민턴협회장기	64강, 32강 16강 32강 64강 32강	▶ 전국종별배드민턴선수권 ▶ 높을고장배 전국종별대회	1회전탈락 1회전탈락

○ 역 도 부

구 분	대 성 중		대성일고	
	참가내역	참가결과	참가내역	참가결과
2020	▶ 코로나로 시합 미출전		▶ 춘계남자역도대회 ▶ 전국시도대항 역도대회 ▶ 전국남자역도대회 ▶ 전국주니어역도대회	금1개, 동2개 은3개 동2개 금3개, 동2개
2021	▶ 전국문곡서상천배대회 ▶ 전국소년체전 ▶ 경남초중체육대회	은2개, 동1개 4위 금3개, 은9개, 동3개	▶ 한국중고역도대회 ▶ 전국남자역도대회 ▶ 전국체전 ▶ 경남도민체전	금3개, 은2개, 동3개 은4개 금2개, 은1개 금12개, 은3개, 동3개
2022	▶ 제70회 전국춘계 남자역도 ▶ 전국소년체전	금3개, 은1개, 동6개 금3개	▶ 제70회 전국춘계남여역도대회 ▶ 제81회 문곡서상천배 ▶ 제94회 남자선수권대회 ▶ 제49회 문화관광부장관기	금3개, 은2개, 동3개 금4개, 은5개 은3개, 동3개 금1개, 은6개

□ 사업비 집행내역

○ 2020년

학교	집 행 내 역(단위:원)							
	합 계	인건비 및 피복비	기숙사비	대회지원비	훈련지원비	용품지원비	여비	업무추진비
창 남 초	22,485,000			2,359,000	4,486,000	15,640,000		
거 창 중	21,480,350			1,645,350	5,640,000	14,195,000		
거창공고	28,579,530		6,000,000	1,347,530	4,881,000	16,072,000	279,000	
대 성 중	13,315,900				7,925,000	5,390,900		
대성일고	13,361,000			2,935,000	5,980,000	4,000,000	446,000	
체 육 회	181,343,990	181,286,990						57,000
계	280,565,770	181,286,990	6,000,000	8,286,880	28,912,000	55,297,900	725,000	57,000

○ 2021년

학교	집 행 내 역(단위:원)							
	합 계	인건비 및 피복비	기숙사비	대회지원비	훈련지원비	용품지원비	여비	업무추진비
창 남 초	22,473,470			3,264,470	6,556,000	12,653,000		
거 창 중	21,469,050			6,243,050	6,751,000	8,475,000		
승강기고	27,454,940		5,700,000	3,097,600	4,768,340	13,492,000	367,000	
대 성 중	13,428,100			368,100	9,060,000	4,000,000		
대성일고	13,662,800			6,352,800	2,772,000	3,692,000	846,000	
체 육 회	181,981,860	181,607,860						374,000
계	280,440,220	181,607,860	5,700,000	19,326,020	29,907,340	42,312,000	1,213,000	374,000

※ 코로나19 상황으로 대회 및 훈련지원비 일부 미집행

□ 2022년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원)

수입				지출						
관	항	목	금액	관	항	목	금액			
위탁금	운영비	운영비	317,500,000	위탁금	인건비	소 계	188,500,000			
						급 여 (후생복지비 포함)	187,500,000			
						피 복 비	1,000,000			
					관리비	소 계	6,000,000			
						출장여비	1,000,000			
						대회참가 실비보상비	3,000,000			
						업무추진비	2,000,000			
					운영비	소계	123,000,000			
						훈련용품비	50,000,000			
						훈련지원비	39,000,000			
						대회지원비	28,000,000			
						기숙사비	6,000,000			
					계	317,500,000		계	317,500,000	

* 인건비

- 급여 : 지도자 5명 × 37,500천원 / 피복비 - 지도자5명 × 200천원

• 지도자(코치) : 배드민턴 김주휘, 역도 이창준, 사격 정희택, 축구 최원민

* 관리비 : 엘리트운동부 운영경비(체육회 여비, 업무추진비, 코치 대회참가 실비보상비)

* 운영비 : 훈련용품비, 훈련지원비, 대회지원비, 기숙사비(500천원 × 12개월)

○ 학교별 집행계획

(단위:천원)

학교명	용품비	훈련비	대회비	합 계	비고
창남초	10,500	7,000	5,000	22,500	배드민턴
거창중	10,000	6,500	5,000	21,500	
승강기고	11,500	7,000	5,500	24,000	
대성중	4,000	6,500	3,000	13,500	역도
대성일고	4,000	7,000	3,500	14,500	
중앙고	10,000	5,000	6,000	21,000	축구
합 계	50,000	39,000	28,000	117,000	

IV 평가 및 재협약 추진

-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을 거창군에서 학교로 직접 집행하는 것은 법령 및 조례상 어려움이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
 - 관련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 거창군체육회에서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협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왔고 운영능력은 충분히 입증되었음
 - 연도별 주요성과(2019~2021)
 - 2019 : 전국대회 수상 / 금 2, 은 9, 동 4
 - 2020 : 전국대회 수상 / 금 3, 은 3, 동 4
 - 2021 : 전국대회 수상 / 금 5, 은 9, 동 2
 - 지원하는 일부 종목의 대회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어 초·중·고 코치 간담회 등을 개최해 성적 향상 방안을 주문하였으나, 엘리트 체육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성과가 담보된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지원 종목에 대해서는 선수들과 군민들의 선호 종목의 변화 등 상황에 맞는 대처가 필요함
 - 전문적이고 다양한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며, 경험이 풍부한 거창군체육회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의 발전을 위해 타당함
 - 거창군체육회 조직 및 인력 현황
 - 직 원 : 12명(종사자 12)
 - 임 원 : 44명(회장 1, 부회장 6, 이사 35, 감사 2)
 - 회원단체 : 50개(종목 33, 읍면 17)
- ⇒ 민간위탁심의위원회(6명) 전원 거창군체육회 재협약 동의

□ 2023년

(단위:원)

수입				지출			
관	항	목	금액	관	항	목	금액
위탁금	운영비	운영비	330,000,000	위탁금	인건비	소 계	188,500,000
						급여 (후생복지비 포함)	187,500,000
						피복비	1,000,000
					관리비	소 계	6,500,000
						출장여비	1,500,000
						대회참가 실비보상비	3,000,000
						업무추진비	2,000,000
					운영비	소계	135,000,000
						훈련용품비	50,000,000
						훈련지원비	38,000,000
						대회지원비	28,000,000
						기숙사비	18,000,000
					계		

V 향후계획

- 2022. 10. :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 군의회 동의
- 2022. 12. : 재협약 체결 및 공증

붙임 협약서(안) 1부.

『엘리트운동부 육성 사업』 민 간 위 탁 협 약 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금의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 및 집행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위탁자인 거창군수 “갑”과 수탁자인 거창군체육회장 “을” 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민간위탁 목적) 본 위탁금은 엘리트운동부의 육성과 우수 선수 발굴 및 학교간의 연계, 학교의 자율적 관리를 통한 거창군 전략종목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금 교부액) 위탁금 교부액은 금330,000,000원(금삼억삼천만원)으로 한다. 단, 의회의 예산 승인에 따라 위탁금은 달라질 수 있다.

제3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2023. 1. 1. ~ 2025. 12. 31.까지로 한다. 단, 위 ·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전에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갑은 재협약 및 재계약 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엘리트운동부 육성 사업을 수탁하여 관리 · 운영함에 있어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한다는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사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거창군 엘리트 운동부 육성과 관련된 제반 사항으로 한다.

제6조(관련법·조례 및 규정 준수 의무) “을”은 수탁 기간 중 「엘리트운동부 육성 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 및 결산 보고 등)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과정에서 “위탁자”가 시정·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은 즉시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 등 예산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결산보고서를 “위탁자”에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위탁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업무의 관리 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전반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검사 및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제1항의 조사·검사 및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에게 엘리트운동부 육성과 관련하여 지침 또는 훈령을 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022년 월 일

“갑” : 거 창 군 수

“을” : 거창군체육회장



관련법령 발췌

□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제 8조 (경비의 지원) ① 군의 체육발전 및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타조례개정 2014.12.31)

② 경비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5.12.10.)

1.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
2.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3. 체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5. 체육지도자,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지원
6.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생활체육 및 여가체육 활성화 지원
8. 전문체육 활동 지원
9. 장애인체육 활동 지원

③ 제2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항신설2015.12.10.)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 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9. 17., 2000. 12. 27., 2007. 12. 2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보조사업 범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5.15. 2019.4.3.>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신설 2009.12.30>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전문개정 2009.12.30>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개정 2009.12.30>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개정 2007. 8. 1)(호 이동 2009.12.30.호삭제및이동2019.4.3. >